|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 집계범위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7년 제40호  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 우대정책을 한층 관철시켜 실현하고, 정책 시행과정 중에 존재하는 문제를 차질없이 해결하기 위해 <재정부ㆍ국가세무총국ㆍ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 정책을 개선하는데 관한 통지>(재세[2015]119호) 및 <국가세무총국의 기업 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 정책 유관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97호)등 문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에 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 집계범위 유관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직원 인건비  직접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직원의 급여보수, 기본 양로보험비, 기본 의료보험비, 실업보험비, 산업재해보험비, 생육보험비와 주택공적금 및 외부 초빙 연구개발인력의 노무비용을 가리킨다.  1.1 직접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인력에는 연구인력, 기술인력 및 보조인력을 포함한다. 연구인력은 주로 연구개발 항목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가리키며, 기술인력은 공정기술, 자연과학 및 생명과학 중 1개 또는 1개 이상 분야의 기술지식과 경험을 구비하였고, 연구인력의 지도 하에 연구개발 업무에 참여하는 인력을 가리킨다. 보조인력은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기능공을 가리킨다. 외부 초빙 연구개발인력은 본 기업 또는 노무파견기업과 노무용공합의(계약)을 체결 및 일시적으로 초빙된 연구인력, 기술인력 및 보조인력을 가리킨다.  노무파견을 받아들인 기업은 협의(계약)의 약정에 따라 노무파견기업에 지불하고, 노무파견기업이 실제로 외부 초빙 연구인력에게 급여보수 등 비용을 지불하며, 이는 외부 초빙 연구개발인력의 노무비용에 속한다.  1.2 급여보수는 규정에 따라 세전공제 가능한 연구개발인력 지분에 대한 장려지출을 포함한다.  1.3 직접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인력 및 외부 초빙 연구개발인력이 동시에 비(非)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기업은 그 인력의 활동상황에 대해 필요한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실제 발생된 관련 비용은 실제 근무시간이 차지하는 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비용과 생산경영비용 간에 배분하고, 미 배분 시 가산공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접 투입비용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소모된 재료, 연료 및 동력비용을 가리킨다. 중간실험과 제품 시제에 사용되는 모형, 공정설비개발 및 제조비용, 고정자산으로 구성되지 않은 샘플, 기계샘플 및 일반 테스트 목적의 구입비, 시험제작 제품의 검사비용,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기, 설비의 운행 및 유지, 조정, 검사, 유지보수 등 비용 및 경영임차방식을 통해 임차하여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기 및 설비의 임차료를 가리킨다.  2.1 경영임차방식으로 임차하여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기 및 설비를 동시에 비(非)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할 경우, 기업은 그 기기설비 사용상황에 대해 필요한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그 실제 발생된 임차료는 실제 작업시간이 차지하는 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비용과 생산경영비용 간에 배분하고, 미 배분 시, 가산공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이 직접 제품으로 형성되거나 또는 구성부분으로서 형성된 제품을 대외 판매할 경우, 연구개발비용 중에 대응되는 재료비용은 가산공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품 판매와 대응되는 재료비용이 서로 다른 납세연도에 발생 및 재료비를 이미 연구개발비용에 산입하였을 경우, 판매 당해연도에 대응되는 재료비용의 발생액에서 직접 당해연도의 연구개발비용을 상쇄하여 감면할 수 있으며, 상쇄 감면할 금액이 부족할 경우, 이후연도로 이월하고 계속하여 상쇄 감면한다.  3. 감가상각비용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기 및 설비의 감가상각비용을 가리킨다.  3.1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기 및 설비를 동시에 비(非)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기업은 그 기기설비의 사용상황에 대해 필요한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그 실제 발생된 감가상각비는 실제 작업시간이 차지하는 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비용과 생산경영비용 간에 배분하고, 미 배분 시 가산공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2 기업이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하는 기기 및 설비가 세법규정에 부합되고 감가상각 우대정책을 선택할 경우, 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 정책을 향유 시, 세전공제한 감가상각부분에 대하여 가산공제를 계산한다.    4. 무형자산 상각비용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특허권, 비(非)특허기술(허가증, 전문기술, 설계 및 계산방법 등을 포함)의 상각비용을 가리킨다.  4.1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무형자산이 동시에 비(非)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될 경우, 기업은 그 무형자산의 사용상황에 대해 필요한 기록을 해야 하며, 그 실제 발생된 상각비용은 실제 작업시간이 차지하는 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비용과 생산경영비용 간에 배분하고, 미 배분 시 가산공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2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무형자산은 세법규정에 부합되며 상각연한의 단축을 선택할 경우, 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 정책을 향유 시, 세전공제한 상각부분에 대해 가산공제를 계산한다.  5. 신제품 설계비, 신공정규정 제정비, 신약(新药) 연구제작 임상실험비, 탐사개발기술 현장실험비는 기업이 신제품 설계, 신공정 규정제정, 신약(新药) 연구제작 임상실험 및 탐사개발기술 현장실험 과정 중에 발생한 해당 항목의 활동전개와 관련된 각 종류의 비용을 가리킨다.  6. 기타 관련 비용  연구개발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기타 비용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기술도서 자료비, 자료번역비, 전문가컨설팅비,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보험비, 연구개발성과의 검색, 분석, 평의, 논증, 감정, 심사, 평가, 검수비용 및 지식재산권의 신청비용, 등록비용, 대리비용, 출장비, 회의비, 직원복리비, 양로보험료 추가비용 및 의료보험료 추가비용을 포함한다.  해당 류의 비용총액은 가산공제 가능한 연구개발비용 총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7. 기타 사항  7.1 기업이 취득한 정부보조를 회계처리 시, 직접 연구개발비용을 감면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세무처리 시 과세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상쇄하여 감면한 후의 잔액에 따라 가산공제 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7.2 기업이 연구개발 과정 중에 형성된 자투리, 불량품 및 중간시제품 등 특별 소득은, 소득 당해연도의 가산공제 연구개발비용을 계산하여 확인할 때, 이미 집계한 연구개발비용 중에서 해당 특수수입을 공제하여야 하며, 공제할 금액이 부족할 경우, 가산공제 연구개발비용을 ‘0’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7.3 기업이 연구개발활동을 전개하는 중 실제로 발생된 연구개발비용이 무형자산으로 될 경우, 그 자본화의 시점과 회계처리는 일치성을 유지한다.  7.4 실패한 연구개발활동으로 발생된 연구개발비용은 세전가산공제 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7.5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97호 제3조에서 지칭하는 ‘연구개발활동 발생비용’은 위탁인이 실제로 수탁인에게 지불한 비용을 가리킨다. 위탁인이 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 정책을 향유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탁인은 모두 가산공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탁인이 관련 측에 위탁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전개할 경우, 수탁인은 위탁인에게 연구개발 과정 중 실제로 발생한 연구개발항목 비용지출 명세를 제공하여야 한다.  8. 집행시간과 적용대상  본 공고는 2017년도 및 이후연도 정산 및 납부에 적용한다. 이전연도에 이미 세무처리를 진행하였다면 더 이상 조정하지 않는다. 우대정책 향유를 소급하는 상황과 관련되는 경우, 본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용 가산공제사항은 본 공고에 따라 집행한다.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97호 제1조, 제2조 제(1)항, 제2조 제(2)항 및 제2호 제(4)항은 동시에 폐지한다.  국가세무총국  2017년 11월 8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研发费用税前加计扣除归集范围有关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7年第40号  为进一步做好研发费用税前加计扣除优惠政策的贯彻落实工作，切实解决政策落实过程中存在的问题，根据《财政部 国家税务总局 科技部关于完善研究开发费用税前加计扣除政策的通知》（财税〔2015〕119号）及《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研究开发费用税前加计扣除政策有关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97号）等文件的规定，现就研发费用税前加计扣除归集范围有关问题公告如下：  　　一、人员人工费用  指直接从事研发活动人员的工资薪金、基本养老保险费、基本医疗保险费、失业保险费、工伤保险费、生育保险费和住房公积金，以及外聘研发人员的劳务费用。  　　（一）直接从事研发活动人员包括研究人员、技术人员、辅助人员。研究人员是指主要从事研究开发项目的专业人员；技术人员是指具有工程技术、自然科学和生命科学中一个或一个以上领域的技术知识和经验，在研究人员指导下参与研发工作的人员；辅助人员是指参与研究开发活动的技工。外聘研发人员是指与本企业或劳务派遣企业签订劳务用工协议（合同）和临时聘用的研究人员、技术人员、辅助人员。  接受劳务派遣的企业按照协议（合同）约定支付给劳务派遣企业，且由劳务派遣企业实际支付给外聘研发人员的工资薪金等费用，属于外聘研发人员的劳务费用。  （二）工资薪金包括按规定可以在税前扣除的对研发人员股权激励的支出。  （三）直接从事研发活动的人员、外聘研发人员同时从事非研发活动的，企业应对其人员活动情况做必要记录，并将其实际发生的相关费用按实际工时占比等合理方法在研发费用和生产经营费用间分配，未分配的不得加计扣除。  　　二、直接投入费用  指研发活动直接消耗的材料、燃料和动力费用；用于中间试验和产品试制的模具、工艺装备开发及制造费，不构成固定资产的样品、样机及一般测试手段购置费，试制产品的检验费；用于研发活动的仪器、设备的运行维护、调整、检验、维修等费用，以及通过经营租赁方式租入的用于研发活动的仪器、设备租赁费。  　　（一）以经营租赁方式租入的用于研发活动的仪器、设备，同时用于非研发活动的，企业应对其仪器设备使用情况做必要记录，并将其实际发生的租赁费按实际工时占比等合理方法在研发费用和生产经营费用间分配，未分配的不得加计扣除。  （二）企业研发活动直接形成产品或作为组成部分形成的产品对外销售的，研发费用中对应的材料费用不得加计扣除。  产品销售与对应的材料费用发生在不同纳税年度且材料费用已计入研发费用的，可在销售当年以对应的材料费用发生额直接冲减当年的研发费用，不足冲减的，结转以后年度继续冲减。  　　三、折旧费用  指用于研发活动的仪器、设备的折旧费。  　　（一）用于研发活动的仪器、设备，同时用于非研发活动的，企业应对其仪器设备使用情况做必要记录，并将其实际发生的折旧费按实际工时占比等合理方法在研发费用和生产经营费用间分配，未分配的不得加计扣除。  （二）企业用于研发活动的仪器、设备，符合税法规定且选择加速折旧优惠政策的，在享受研发费用税前加计扣除政策时，就税前扣除的折旧部分计算加计扣除。  　　四、无形资产摊销费用  指用于研发活动的软件、专利权、非专利技术（包括许可证、专有技术、设计和计算方法等）的摊销费用。  　　（一）用于研发活动的无形资产，同时用于非研发活动的，企业应对其无形资产使用情况做必要记录，并将其实际发生的摊销费按实际工时占比等合理方法在研发费用和生产经营费用间分配，未分配的不得加计扣除。  （二）用于研发活动的无形资产，符合税法规定且选择缩短摊销年限的，在享受研发费用税前加计扣除政策时，就税前扣除的摊销部分计算加计扣除。  　　五、新产品设计费、新工艺规程制定费、新药研制的临床试验费、勘探开发技术的现场试验费  指企业在新产品设计、新工艺规程制定、新药研制的临床试验、勘探开发技术的现场试验过程中发生的与开展该项活动有关的各类费用。  　　六、其他相关费用  指与研发活动直接相关的其他费用，如技术图书资料费、资料翻译费、专家咨询费、高新科技研发保险费，研发成果的检索、分析、评议、论证、鉴定、评审、评估、验收费用，知识产权的申请费、注册费、代理费，差旅费、会议费，职工福利费、补充养老保险费、补充医疗保险费。  此类费用总额不得超过可加计扣除研发费用总额的10%。  　　七、其他事项  （一）企业取得的政府补助，会计处理时采用直接冲减研发费用方法且税务处理时未将其确认为应税收入的，应按冲减后的余额计算加计扣除金额。  （二）企业取得研发过程中形成的下脚料、残次品、中间试制品等特殊收入，在计算确认收入当年的加计扣除研发费用时，应从已归集研发费用中扣减该特殊收入，不足扣减的，加计扣除研发费用按零计算。  （三）企业开展研发活动中实际发生的研发费用形成无形资产的，其资本化的时点与会计处理保持一致。  （四）失败的研发活动所发生的研发费用可享受税前加计扣除政策。  （五）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97号第三条所称“研发活动发生费用”是指委托方实际支付给受托方的费用。无论委托方是否享受研发费用税前加计扣除政策，受托方均不得加计扣除。  委托方委托关联方开展研发活动的，受托方需向委托方提供研发过程中实际发生的研发项目费用支出明细情况。  　　八、执行时间和适用对象  本公告适用于2017年度及以后年度汇算清缴。以前年度已经进行税务处理的不再调整。涉及追溯享受优惠政策情形的，按照本公告的规定执行。科技型中小企业研发费用加计扣除事项按照本公告执行。  　　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97号第一条、第二条第（一）项、第二条第（二）项、第二条第（四）项同时废止。    国家税务总局  2017年11月8日 |